방송광고거래약관

(직거래 광고주용)

제정 2012.12. 1 개정 2016. 8.25 시행 2016. 9. 1 개정 2020.11.30. 시행 2020.11.30 개정 2025. 2.21 시행 2025. 3. 1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직거래광고주(이하 "광고주"라 합니다)의 방송광고거래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송광고판매법"이라 합니다)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합니다)를 통해 직접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약관의 신고 및 변경)** ①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신고를 한 것이고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합니다.
 - ②공사는 이 약관을 공사 홈페이지(www.kobaco.co.kr)에 게시하고, 광고주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 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③공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광고주에 불리한 약관 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④제③항에 따라 변경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한 후 7일 이내에 광고주의 명시적인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광고주가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광고주는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사는 방송광고 거래 기본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적용 범위) 이 약관은 방송광고판매법 제5조에 따라 공사가 방송사로부터 위탁받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업무 및 방송법 제73조에 따라 공사가 외주제작사로부터 위탁받은 간접광고 판매대행업무에 적용합니다. <개정 2016.8.25.>
-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 2. "광고회사"라 함은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 공사에게 방송광고를 의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 3. "광고주"란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또는 행위, 사실 등에 대하여 판매 또는 홍보 등을 목적으로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 4. "방송편성"이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5. "방송프로그램"이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 6. "방송프로그램광고"란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합니다) 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7. "중간광고"란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8. "토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9. "자막광고"란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를 말합니다.
- 10. "시보광고"란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를 말합니다.
- 11. "가상광고"란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 12. "간접광고"란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방송광고를 말합니다.
- 13. "광고요금"이란 공사가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 14. "시급"이란 시청률 또는 청취율을 고려하여 방송사와 공사가 협의하여 정한 방송광고 시간대별 등급을 말합니다.
- 15. "전파료"란 전파발사에 필요한 제경비 차원의 시설비, 전기료, 인건비 등의 개념을 요금에 반영한 금액을 말합니다.
- 16. "대체방송물(필러)"이란 급박한 사정에 의해 기본편성표에 예정된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방송된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 17. "광고주 방송광고대행계약업무"란 방송광고 대행을 의뢰하는 광고주와 의뢰를 받는 광고회사간의 신규 계약, 기존 계약의 연장 및 기존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업무를 말합니다.
- 18. "방송광고 전산시스템"이란 공사가 광고주와 광고회사에 방송광고 관련 업무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시스템으로써 방송광고청약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코바넷(KOBANET)(이하 "코바넷"이라 합니다)과 방송광고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는 코덱스 (KODEX)(이하 "코덱스"라 합니다)시스템을 말합니다.
- 19. "운행불일치"란 광고주가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한 대로 방송광고가 방송되지 않거나 공사를 통해 방송사에 의뢰하지 않는 방송광고가 방송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0. "신탁마감"이란 광고주가 청약한 광고료를 월단위로 정산하는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 21. "광고료"란 공사가 광고주에 판매한 방송광고요금 총액을 말합니다.
- 22. "거래금액"이란 광고료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23. "광고료 세금계산서"란 공사가 부가가치세법 등의 관계 법규에 따라 월간 광고료를 월말 기준으로 광고주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제5조(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과 방송 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련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2장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 체결

- 제6조(제출서류) 방송광고를 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공사와의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2.21>
 - 1. 사업자등록증(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주민등록증(개인) 사본 1부(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원본대 조필)
 - 2. 법인인감 또는 개인인감 증명서 1부(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
 - 3. 공사와 거래할 법인명의의 통장 사본 1부
 - 4. 삭제 <2025.2.21>
- **제7조(변경사항 통보)** 계약기간중 제6조의 제1호부터 제2호의 제출서류에 변경이 있는 광고주는 변경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장 방송광고 청약을 위한 업무

제1절 공통사항

- 제8조(방송광고요금) ①광고요금과 시급은 방송광고요금표에 따릅니다. 방송광고요금표는 공사 홈페이지 (www. kobaco.co.kr)에 공지합니다. 이 경우,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에 게재함으로써 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②대체방송물(필러)로 재방송된 경우는 전파료만 적용하며, 광고요금은 광고주와 협의 후 청구합니다.
- 제9조(시급의 적용과 변경) ①방송광고가 복수의 시급에 걸쳐 방송되는 경우, 토막광고와 자막광고는 높은 쪽의 시급을 적용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전파료는 해당시급의 비율에 의합니다.
 - ②방송광고가 다른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급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상 광고는 시급이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도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 1. 방송프로그램의 전후 방송프로그램광고가 각각 청약당시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보다 낮은 시급으로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 방송프로그램 광고요금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높은 시급으로 변경 방송된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 2. 토막광고 및 자막광고가 낮은 시급으로 10분 이상 변경되어 방송된 경우에는 실제 방송된 시급의 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급이 2시급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종 변경된 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제1호의 시급변경을 동반한 시보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변경된 시간대의 기본방송 프로그램에 준하여 재산정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지역지상파텔레비전방송 및 라디오방송의 시보 광고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은 제2호의 토막광고의 시급변경에 따른 광고요금을 기준으로 산 정합니다.
- 제10조(시간변경, 불방) ①공사는 천재지변 등 방송사의 합리적인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이하 "불가항력"이라 합니다), 공공적 및 사회적 필요성 또는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이 변경됨에 따라 광고주가 청약한 방송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의 시간변경으로 인한 광고요금은 제9조를 준용합니다. 단 간접광고의 경우에는 당초 청약한 간접광고요금을 적용합니다.

제11조(개편) ①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방송사로부터 방송프로그램 개편통지를 받은 때에는 공사는 광고 주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다만, 공사의 코바넷에 개편 공지를 함으로써 통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②광고주가 개편된 방송프로그램에 개편 전 청약한 방송광고시간대로 계속 방송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광고주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방송광고물의 접수, 심의와 전송) 광고주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방송광고를 하고자하는 방송광고물을 공사에 접수, 방송사의 방송가능 판정을 받아 방송되도록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광고주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cmreview.kobaco.co.kr)에 접속하여 방송광고물을 등록 합니다.
 - 2. 방송사(한국방송협회)는 방송광고 심의관리시스템(cmreview.kobaco.co.kr)에 접속하여 광고주가 등록한 방송광고물을 심의 합니다.
 - 3. 공사는 코바넷에 방송사(한국방송협회)가 심의 완료한 광고주의 방송광고물을 등록하고 디지털 화한 후, 방송국에 방송광고물을 전송합니다.
 - 4. 삭제 <2025.2.21>
- 제13조(방송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주가 방송광고를 청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을 공사에 신청(청약)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②공사는 제1항의 신청(청약)을 코바넷에 입력한 후, 확정 처리하고, 코바넷을 통해 방송사에게 업무 연락을 합니다. <개정 2025.2.21>
 - ③제1항, 제2항의 방송광고 청약에 의한 방송광고 기간은 공사와 광고주가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광고주는 방송광고청약시 제6조제1호의 명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14조(판매방식)** ①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판매방식을 운영합니다. <개정 2020.11.30.>
 - 1. 복수의 방송광고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하는 패키지 판매방식(단, 제15조의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제외합니다)
 - 2. 판매기간에 따른 판매방식
 - 가. 업프런트(Upfront) 판매 : 3개월 이상 단위 판매
 - 나. 정기물 판매 : 2개월 이하 단위 판매
 - 다. 임시물 판매 : 단 건에서 1개월 이하 단위 판매
 - 3. 공사가 사전 지정한 방송광고를 대상으로 보다 높은 광고요금을 제시하는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판매하는 프리엠션(Preemption) 판매방식
 - 4. 공사가 사전에 정한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대가를 부담할 경우에 방송광고 청약자가 방송프

로그램광고의 방송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광고순서 지정판매방식

- 5. 시청률 요인, 방송광고 시장의 변동 요인 등을 고려하여 방송광고 청약자에게 시청률, 청약횟수 등을 보장하거나 청약액을 확정하는 판매방식
- 총시청률(Gross rating points) 보장판매, ROS(Run of Schedule)판매, 월 청약액 확정 판매 등 ②공사는 방송사와 협의하여 방송광고 판매방식에 따라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2.21>
- ③제1항에 따른 판매방식 및 그 변경이나 폐지, 제2항에 따른 광고요금의 할인 및 할증, 무상의 방송광고시간 추가제공 등은 방송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며 그 내용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로 사전고지합니다. 다만, 협의된 내용을 광고1번지 등 판매정보지와 코바넷에 게재함으로써 사전고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제15조(방송광고 결합판매) 공사는 방송광고판매법 제20조에 따라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하여 판매합니다.

제16조(광고판매의 제한) 공사는 광고주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광고를 판매 할 수 없습니다.

- 제17조(방송광고 중지) ①광고주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사는 광고주와의 방송광고거래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공사에 의뢰한 방송광고의 중지를 방송사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1. 이 약관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 2.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3.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 4. 기타 관계법규에 저촉되어 방송광고에 적합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 ②고주는 방송광고 청약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방송광고 개시 전 공사 영업사원과 협의하여 방송광고의 중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제18조(운행불일치) ①방송광고 운행불일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 1. 공사 또는 방송사의 착오로 방송광고 청약자의 방송광고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가. 편집착오: 구 광고소재 사용, 광고소재 착오, 방송광고 기간 착오
 - 나. 초수 짤림
 - 다. 비디오, 오디오 불량 등
- 2. 방송광고 청약자가 청약하지 않은 방송광고가 방송된 경우 및 시간대 착오, 법적 허용량 초과 방송광고물 등
 - 3. 방송광고 청약자의 귀책사유로 방송광고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방송된 경우 등
- ②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경우 해당분의 광고요금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③제1항의 제3호의 경우 광고요금을 방송광고 청약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청약 및 편성 변경 등의 사유로 광고요금이 변동되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방송광고 청약자, 방송사, 공사가 협의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제2절 간접광고에 관한 특례

- 제19조(간접광고의 특례)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약관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되,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특례조항에 따릅니다.
- 제20조(용어의 정의) 간접광고 영업대행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용어는 각 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릅니다. <개정 2016.8.25.>
 - 1. "노출"은 방송프로그램 내에서 상표, 로고 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회사를 알 수 있는 표시를 화면에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2. "노출횟수"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시행된 노출의 횟수를 말하며, 이때 1회는 한 회 방송분당 한 장면(scene)에서 상표, 로고 등이 노출되었을 때로 정의합니다. 단, 청약사항에 따라 1초 노출 또는 방송프로그램 1회 방송을 노출 1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간접광고 판매의뢰서"는 공사에 간접광고 판매를 의뢰하기 위하여 방송사 (또는 외주제작사)가 방송프로그램에 간접광고를 노출하고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노출 가능한 간접광고 의 유형, 노출방식 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합니다.
 - 4. "간접광고 이행의뢰서"는 광고주가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노출품목, 노출방식 등 간접광고 노출에 관한 세부적인 이행사항을 기술한 서류를 말하며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가 수락하면 광고주와 공사간 간접광고의 내용으로 확정됩니다.
- 제21조(예고방송, 재방송, 연장방송) ①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예고방송된 경우, 그 예고방송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②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재방송된 경우, 그 재방송분에 대해서는 간접광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③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연장 방송된 경우, 연장방송분에 대한 간접광고료 등 간접광고 내용은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종전의 청약자가 연장방송분에 대해서도 계속 간접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제22조(간접광고물의 접수) <삭제 2020.11.30.>

- 제23조(간접광고 청약과 청약의 승낙) ①광고주는 사전 고지된 제작일정에 맞춰 간접광고제작에 차질이 없도록 판매의뢰서를 토대로 공사의 영업사원과 협의 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이행의뢰서를 작성하여 방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5.2.21>
 - ②공사는 제1항의 청약을 승낙하여 확정처리하고, 코바넷 등을 통해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에게 업무연락을 합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5.2.21>
 - ③광고주는 간접광고 청약시 제6조 제1호에 따른 대행계약 광고주 명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 제24조(간접광고계약 성립) 코바넷을 통해 발송된 청약서 및 이행의뢰서를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가 이의 없이 접수하면 방송사(또는 외주제작사), 광고주, 공사 간 간접광고계약이 성립되며, 이는 방송 광고거래 기본계약으로 대체됩니다. <개정 2016.8.25.> <개정 2025.2.21>

- 제25조(상호협력) ①광고주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및 간접광고 진행상황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공사는 이에 적극 협조합니다.
 - ②광고주는 자신이 청약한 간접광고가 원활히 노출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 제작시 광고주의 상호, 상품 및 영업장 등의 사용 또는 이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26조(조기종영) 간접광고로 청약된 방송프로그램이 불가항력이나 공공적, 사회적 필요성 및 방송사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조기 종영될 경우, 간접광고요금은 본 방송에서 실제 노출된 횟수에 한하여 청구됩니다.
- 제27조(권리귀속 등) ①공사와 광고주가 간접광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발하거나 획득한 간접광고물, 노하우, 기술, 설계 등의 모든 권리의 귀속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광고주가 간접광고물을 활용할 경우에, 광고주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4장 신탁마감

- 제28조(신탁마감 일정) 신탁마감은 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신탁마감일은 신탁 발생 월의 익월 1일이며 그 신탁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첫 근무일을 신탁마감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사는 신탁마감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29조(신탁마감 자료 제공) 공사는 광고주가 공사에 통보한 이메일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 등 신탁마감자료를 발송합니다.
- 제30조(신탁마감 관리) ①광고주는 당초 청약내용과 방송광고 집행 변동을 수시로 체크하고, 변동 점검 과정에서 청약과 다르게 방송이 집행될 경우, 즉시 담당 영업사원과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②세금계산서 발행시에 필요한 제6조의 제출 서류의 변경 사항을 사전에 통보해 주셔야 정확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됩니다. <개정 2020.11.30.>

제5장 세금계산서

- 제31조(월합계세금계산서) 제32조의 광고료 세금계산서는 매월말 기준으로 발행되는 월합계세금계산서 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광고주가 폐업, 월 청약액 확정 상품 구매 등의 사유로 월말일자가 되기 전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달리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0.11.30.>
- **제32조(광고료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는 광고주의 광고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제33조(가산세 등) ①제32조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세법상의 일체의 책임은 공사가 집니다. ②제7조 변경사항을 공사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세법상의 일체의 책임은 광고주가 집니다.

제6장 방송광고료 납부와 환불

- 제34조(방송광고료 납부) ①광고료는 방송 청약 이전에 현금 선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제37조의 지급보증을 제출하는 광고주는 광고료를 후불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다음 각 호의 수단으로 납부하되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점에서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납부일 22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합니다. <개정 2020.11.30.>
 - 1. 현금
 - 2.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표지어음 등의 금융상품
 - 3. 광고주의 금융기관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한 전자결제
 - 4. 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
 -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 말 기준으로 익월 22일까지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수단으로 납부하되 방송광고를 한 당해월말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현금화될 수 있도록 납부할 수 있으며, 제37조의 지급보증을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정부기관, 공공기관, 정부투자 기업체
 - 2. 은행, 보험, 증권, 투자신탁, 투자금융회사와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
 - 3. 광고회사 대행 중 거래실적이 있는 광고주가 직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우량광고주
- 제35조(납부 기한의 연장) 광고주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34조제2항의 방송광고료 납부 기일 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와의 협의와 사전승인을 받아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월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36조(광고료 환불) ①광고주는 광고청약기간이 종료된 후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방송 청약 이전에 현금 선입금한 금액이 실제 방송집행액 보다 많은 경우, 동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광고주가 요청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확인한 후 환불하여야 합니다.
 - ③ 광고주 폐업이나 기타의 이유로 제1항의 환불 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상사시효(상법 제64조)가 도 과한 경우, 공사는 해당 금액을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신설 2025.2.21>

제7장 지급보증 제출

- 제37조(지급보증 제출)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광고료를 선입금이 아닌 후불로 납부할 경우 광고주는 광고료에 대한 지급보증으로서 공사에게 방송광고 청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8조(지급보증 유형) 광고주는 다음의 지급보증 유형 중 하나 또는 병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

정 2025.2.21>

- 1. 정부에서 인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 2.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3.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제39조(지급보증 교체·연장, 중액 및 감액) ①광고주는 제38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급보증서의 만기가 도래할 경우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교체·연장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2.21>
 - 1. 제38조 제1호의 지급보증서는 보증기간 만료일 3개월전에 교체
 - 2. 제38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증기간 만료일 1개월전에 교체
 - ②광고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와의 거래금액이 제40조의 지급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액을 하여야 하며, 지급보증 금액이 감소할 경우에는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0조(지급보증 금액) 광고주의 지급보증 금액은 다음 제1항의 기본지급보증금액과 제2항의 추가지급 보증금액의 합계 금액 이상으로 합니다.
 - ①기본지급보증금액은 방송광고를 개시한 당월의 광고료와 해당월 광고료를 제34조 제2항의 광고료 지불기한까지의 외상거래금액으로 합니다.
 - ②추가지급보증금액은 제34조 제2항 제4호의 광고주가 발행한 수표 또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광고료로 납부할 경우의 해당금액으로 합니다.

제8장 기타 적용 사항

- 제41조(기한이익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광고주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공사에 대한 광고 주의 이 약관상 모든 채무는 이행기한 만료전이라도 즉시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1.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2. 파산 또는 회생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 3.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42조(손해배상 등) ①귀책사유로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불일치와 관련한 광고요금청구에 대해서는 제18조의 규정에따라 처리합니다.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공사에게 광고료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합니다)에 당해 미지급금액 및 지연발생시점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bok.or.kr)에 게시되어 있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금리 중신규취급액 기준 기업일반자금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정 2020.11.30.><개정 2025.2.21>
 - ③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이 취소 또는 변경되어 기 체결된 방송광고 청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방송되지 않거나 지체 또는 불완전하게 방송된 경우에, 공사는 이로 인하여 광고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개정 2025.2.21>

- ④간접광고의 노출이 방송법, 방송광고심의 기타 방송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저촉되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광고주는 공사와 방송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제43조(비밀유지) ①공사와 광고주는 이 약관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양자를 통칭하여 이하 "비밀정보"라 합니다)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약관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방송광고제작 및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이하 "방송광고 관련자"라합니다)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 ②공사나 광고주가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하고도 충분한 비밀유지의무를 방송광고 관련자에게 부과하여야 합니다.
 - ③공사나 광고주가 비밀정보를 이 약관상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상대방으로 부터 제공한 비밀정보의 반환 또는 폐기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44조(약관의 이행 등) ①공사와 광고주는 이 약관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 방송광고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준수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이 약관상의 의 무를 이행합니다.
 - ②공사와 광고주는 상대방이 이 약관상의 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위반상 태가 해소될 때까지 자신의 이 약관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③공사와 광고주는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사전서면 동의 없이 이 약관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④이 약관의 어느 조항이 무효 또는 집행불능 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가능합니다.
- 제45조(약관 외 규정의 적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방송광고 판매법 및 동법 시행령과 고시 등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와 광고주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상관습이나 상법에 따릅니다.
- 제46조(분쟁해결) 이 약관의 해석,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와 광고주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 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6.8.25.>

이 약관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0.11.30.>

이 약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25.2.21.>

이 약관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